

제405회 정례회

'22. 12. 6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상정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22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3일

3. 제안사유

○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법령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 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○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사업비 외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,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에 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

-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1조, 제2조**는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과 일치하도록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을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.
- **안 제4조**는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인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수정한 것으로 타당함.
- **안 제5조**는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<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관련 조항 개정 내용 비교>
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 전	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 후
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	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<u>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	<u>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u>
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	③ 삭제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현재 충청북도는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제2항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”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재향군인회에 운영비*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, 조례에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음.

* 2019년 15백만원, 2020년 18백만원, 2021년 18백만원, 2022년 16백만원

- 이에 본 조례안은 조례상에 운영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고 1**충청북도 재향군인회 기본현황**

단체명	충청북도재향군인회
대표자	고종훈
설립일	1962.12.28
조직구성	11개 시.군회, 1개 산업단지회, 141개 읍.면동회
회원수	332,608명
주요활동	도내행사주관, 안보교육 및 결의대회, 지역봉사
기 타	“우리는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헌신한 전우다”

참고 2**충청북도 재향군인회 도비 지원 현황**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합계	62,536	64,536	167,289	67,459	65,242
운영비	14,536	15,536	18,289	18,459	16,742
경상사업비	48,000	49,000	49,000	49,000	48,500
기능보강비	0		100,000		